번호			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과 설계변경 시 조정·계상 방법
2			제135회 제3교시 2번 · 학습용 답안 예시
			1. 개요
			· 산업안전보건관리비: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에 직접 쓰거나 본사
			안전전담부서가 법령 사항 이행에 쓰는 비용(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)
			· 근거: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
			제2025-11호, 2025. 2. 12. 시행)
			· 적용: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건설공사, 단가계약은 총계약금액 기준
			2. 계상 주체와 대상액
			· 계상 주체: 발주자(예정가격 작성 시), 자기공사자(사업계획 수립 시)
			· 대상액 = 직접재료비 + 간접재료비 + 직접노무비(발주자 제공 재료비
			포함)
			· 입찰공고로 고지, 도급계약서에 별도 표시
			3. 공사 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
			· 5억 원 미만: 대상액 × 비율(건축 3.11%, 토목 3.15%, 중건설 3.64%,
			특수건설 2.07%)
			·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: 대상액 × 비율 + 기초액(건축 2.28% +
			4,325,000원, 토목 2.53% + 3,300,000원, 중건설 3.05% + 2,975,000원,
			특수건설 1.59% + 2,450,000원)
			· 50억 원 이상: 대상액 × 비율(건축 2.37%, 토목 2.60%, 중건설 3.11%,
			특수건설 1.64%)

번호			·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공사: 건축 2.64%, 토목 2.73%, 중건설 3.39%,
2			특수건설 1.78%
			· 공사 종류는 별표 5 예시표로 판단, 둘 이상이면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종
			적용(분리발주 제외)
			· 요율 적용: 2025. 1. 1. 이후 계약 체결 공사부터(부칙 제2024-53호), 이전
			계약은 당시 요율
			4. 계상 특례
			· 발주자 재료 제공·완제품 납품: 포함 산출액과 제외 산출액의 1.2배 중
			작은 값 이상
			· 대상액 불명확: 총공사금액의 70%를 대상액으로 보고 산정
			5. 설계변경 시 조정·계상 방법
			· 대상액 변동 시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조정 계상(고시 제4조 제5항)
			· 변경 후 관리비 = 변경 전 관리비 + 증감액
			· 증감액 = 변경 전 관리비 × 대상액 증감 비율
			· 증감 비율 = (변경 후 대상액 - 변경 전 대상액) ÷ 변경 전 대상액 × 100%
			· 대상액은 예정가격이 아닌 설계변경 전·후 도급계약서상 금액
			· 예외: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대상액으로 재계상
			6. 계산 예(가상 건축공사)
			· 변경 전: 30억 원 × 2.28% + 4,325,000원 = 72,725,000원
			· 대상액 36억 원으로 증가 → 증감 비율 20%, 증감액 14,545,000원
			· 변경 후: 72,725,000원 + 14,545,000원 = 87,270,000원

번호			· 36억 원 재계산값 86,405,000원과 다름 → 별표 1의3 비례 조정 적용
2			7. 관리상 유의사항
			· 공정률별 최소 사용: 50% 이상 시 50%, 70% 이상 시 70%, 90% 이상 시
			90%(별표 3)
			·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·감리자 사용내역 확인, 목적 외
			사용·미사용분은 감액·반환 대상
			· 2026. 10. 27. 공포 개정법: 계상 의무 도급인 확대(건설업 2027. 4. 28.
			시행 예정), 하위 고시 개정 확인 필요
			※ 공식 정답·채점기준이 아닌 학습용 예시임